

		시 민			
문서번호	현장지휘대-12580	담당자	구조구급팀장	3지휘대장	소방서장
결재일자	2013. 12. 31.	김중제	김춘수	조동건	12/31 권병용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이성호
방침번호		담당자			

2014년도 119구조·구급대원  
**감염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**



**강서소방서**  
(현장지휘대)

## 사전 검토항목

:::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민 참여 고려 사항	● 시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이해당사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전문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음브즈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법령 및 기타 고려 사항	● 법령 규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기타 사항 : 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른 우리말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■
타 자 원 의 활 용	● 중앙부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기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관계 기관 및 단체 협의	● 관계 기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민간 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) 무 ■

2014년도 119구조·구급대원

# 감염방지 및 안전관리 계획

- ❖ 119구조·구급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질병 접촉, 건강관리 등 119구조·구급대원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임.

## I 관련근거

-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27조
  - 法 제23조(구조·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등 수립 및 시행)
  - 施行令 제25조(안전사고방지대책)/제26조(감염방지대책)/제27조(건강관리대책)
- 재난대응과-32425(2013.12.26.)호 “『2014년도 119구급대원 안전관리계획 알림』
- 재난대응과-31619(2013.12.16.)호 “2014년도 「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계획」 통보”

## II 추진방향

- 119구조·구급대원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교육·훈련추진
- 구조·구급장비 등에 대한 소독 및 오염, 위생 등 예방관리
- 재난현장 활동 중 전염성 질병환자 접촉시 신속한 대응
  - \* 2차감염 차단 및 진단, 격리, 병원치료

### III 중점추진사항

- 감염방지위원회 구성·운영 및 감염방지 업무책임자 지정
-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교육 및 훈련
- 감염방지시설을 이용한 유해, 감염·생물체 오염 구조장비 위생관리
- 119구조·구급대원 정기 건강검진 추진
- 유해물질, 감염·생물체 접촉에 대한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지속관리
- 구조구급대원 PTSD(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) 관리 및 교육
- 전염성이 강한 감염성 질병 발생에 따른 현장 투입 및 이송
- 119구조·구급대원의 호흡 및 신체보호장비(PPE) 착용기준 확행

### IV 세부추진 계획

#### 1] 감염방지위원회 구성·운영 및 감염방지 업무책임자 지정

- 감염방지위원회 구성·운영
  - 위 원 장 : 소방서장
  - 위 원 : 총 5명(현장지휘대장 1, 소방행정과장 1, 구조대원 1, 구급대원 1, 자문의사 1)
  - 간 사 : 구조구급팀장
  - 운영시기 : 연 2회(상·하반기 1회)

《 위원회 역할 》

건강유지	채용신체검사, 정기검진, 면역주사, 지속적인 건강평가, 감염 직원 지원프로그램, 의료기록
현장활동 및 회복	출동준비(감염방지 훈련, 출동차량에 개인 안전장비의 비축 및 유지관리), 현장관리(현장활동, 홍보, 정보제공), 귀소(청소·살균·소독, 개인 안전장비의 유지관리, 폐기기법)
노출이후	통보, 확인, 치료 및 사후관리, 기록 및 보존
근무처 관리	주방, 대기실, 욕실, 세탁실, 장비저장·소독 및 폐기장소
예산편성	구급대원 보호장비 및 감염방지 기기 등의 소요 예산 수립

- 감염방지 업무책임자 · 감독자 지정
  - 책 임 자 : 각 119안전센터장 및 구조대장
    - 현장 감염방지 활동·추적관리, 교육 등
  - 감 독 자 : 현장지휘대장, 구조구급팀장
    - 감염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사항 감독

## 2 구조(생활안전대)·구급대원 감염방지 교육 · 훈련

- 정기교육 : 소방서 · 특수구조단(항공대) 년 1회 이상
  - 전문강사 초빙 교육 실시 (2014년도 별도계획 수립)
- 일상교육 : 119안전센터 생활안전대 및 구급대(구조대) 각 팀별 월1회 이상
  - 각 119안전센터장 및 구조대장 별도 계획 수립 후 교육 실시
    - ▷ 구급대 : 전문교육 시 감염방지 교육 병행 실시
    - ▷ 생활안전대 및 구조대 → 구조구급대원 안전관리표준 지침(붙임1참조)
  - 교육 후 (참고 2 서식)에 의거 매월 3일 까지 보고
- 수시교육 및 훈련 : 119안전센터(구조대) 교대점검 시 안전교육 실시
  - 안전관리 매뉴얼, 장비조작법, 개인안전장구 착용 등
  - 교육 후 결과 근무일지 기재

## 3 유해, 감염 · 생물체 오염 구조·구급장비 위생관리

- 대 상 : 구조(생활안전대)·구급대원
  - 위생관리 : 감염관리실 및 119안전센터 소독기 활용
  - 방 법
    - 각 119안전센터 생활안전대 및 구조대
      - ▷ 정기 위생관리 : 월 1회 유해동물 포획 · 관리용 장비, 공기호흡기 면체, 간이 호흡기 등
      - ▷ 수시 위생관리(출동 이후) : 화학, 생물, 방사능 등 출동 및 동물 등 생물체 포획장비 및 신발 등
- ※ 사체인양, 사상자 인명구조 활동종료 후 사용장비 전체

- 구급대

▷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 기구 등 소독

(사채인양, 사상자 구급활동 종료 후 사용장비 전체)

- 감염관리실 운영 실적보고 : (참고3 서식)에 의거 매월 구조대 및 구급대별 보고

※ 구급대 : 매 월보 서식에 포함

#### 4 119구조·구급대원 정기 건강검진 추진

○ 대 상 : 전 구조·구급대원

○ 회 수 : 연 2회(상·하반기)

- 신규 채용되어 6개월 이내 구급대원으로 배치된 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로 같음

- 1차는 소방공무원 건강검진과 병행 실시(2차는 하반기 별도계획 수립)

○ 검진기관 : 지정 응급의료기관, 건강검진센터 등

○ 검진결과 조치

-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보직변경 추진

- 전염성 질병 보균자로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시 즉시 추적관리

- 기타 질병에 대하여는 재검진을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치료병행

○ 별도보관(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자료보관)

-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

- 정기검진 결과서

- 그 밖에 구조·구급대원의 병력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등

## 5 유해물질, 감염생물체 접촉에 대한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지속관리

- 시 기 : 노출 · 접촉사실 인지한 경우
- 보 고
  - 유선보고 : 현장(즉시) → 구조구급팀 → 재난대응과 · 본부 당직관
  - 서면보고 : 유해물질 접촉보고(참고4 참조)
    - ▷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 → 소방서(1일 이내)
    - ▷ 소방서 → 본부 재난대응과(3일 이내)
- “감염방지 업무책임자” 조치사항

- ☆ (1차) 관할 소방서 지정 응급의료기관에 특별 건강진단 및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.
- ☆ 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15일 동안 추적 · 관리해야 한다.
- ☆ 건강진단 결과 일개 구조대원이 감염 · 보균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
  - ① 구조대 전원을 대상으로 (2차) 국립경찰병원에 격리입원,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.
  - ② 진료결과 이상이 없는 구조대원은 15일 동안 추적 · 관리해야 한다.
  - ③ 진료결과 이상이 있는 구조대원은 의료기관의 완치 시까지 입원 조치해야 한다.
  - ④ 감염방지 업무책임자는 감염·보균 경력 구조대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자로 간주하여 복무관리 해야 한다.

## 6 119구조·구급대원 PTSD(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) 관리 및 교육

- PTSD 관리 및 교육 : 년 1회
  - 소방행정과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자살예방교육과 병행 처리
- 수시관리 : 대형재난 발생 시, 폭행피해 발생에 의한 장애우려 대원
  - 강북구 정신건강 증진센터 건강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에 참여

## 7 전염성이 강한 감염성 질병 발생에 따른 현장 투입 및 이송

- 환자구조 및 이송 : 최소 구조·구급대원 투입 원칙 (희망자 우선)
- 복장 및 장비 : 생화학 보호복(레벨C) 착용 및 최소 장비, 차량 투입
- 사후 관리 및 장비 관리
  - 구조·구급대원 격리병실 입원 및 치료(잠복 기간)
  - 1회 용품, 생화학 보호복 폐기 및 투입 장비, 차량 소독
    - ※ 폐기 물품 지정병원 및 장비, 차량 소독 지정장소 이용
- 기본원칙
  - 구조·구급대원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
  - 유관기관과 사후관리 할 수 있는 후속조치 협의 후 현장투입
  - 감염병 관련 유관기관 협조 요청 시 본부 보고 우선
    - 본부(구조대책팀, 구급관리팀, 행정지원팀)에서 유관기관 협의 후 지원결정
- 재난 및 안전사고유형별 개인보호장구(PPE) 착용기준(구조대)
  - 착용장비 : 구조대원 호흡 및 신체보호용 개인보호장구(PPE)
  - 착용기준 : 화재, 산악, 추락·승강기, 폭발·붕괴 등 재난유형별 (참고5참조)

## 8 관련 소모성 구조장비 확충(생활안전대)

- 멸균용 장비 : 멸균·소독기, 분무식 구조장비 소독용 기구 등
- 오염장비 처리 : 폐기물 처리 지정병원, 지정업체 협조처리
- 예산과목 : 특수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/ 사무관리비(201-01)



비닐장갑 (외과용)	마스크 (분진, 유해)	보호안경 (시력보호, 작업용)	감염방지가운 (1회용 사체낭)	비닐커버 (노랑, 파랑, 백색)	비닐팩 (대중소)
구조대별 1 (200장)	대원별 1	대원별 1	구조대별 1 (10장)	구조대별 1 (50m)	구조대별 (10)

\* 2014년도 상반기 중 별도계획 수립 후 구입예정

## 9 재난 및 안전사고유형별 개인보호장구(PPE) 착용기준

- 이행준수 : 구조대원(구조대장, 구조대원 등)
- 착용장비 : 구조대원 호흡 및 신체보호용 개인보호장구(PPE)
- 착용기준 : 화재, 산악, 추락·승강기, 폭발·붕괴 등 재난유형별

## V

### 행정사항

- 구조대장은 구조대원의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 개인보호장구(PPE) 착용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감염 및 안전관리 철저(소방복제규칙의 ‘활동모’ 착용금지)
- 각 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장은 재난현장 활동 후 각 대원이 잠복기를 갖는감염, 오염, 보균, 방사선 노출, 점염 등에 의해 정신 및 신체적 징후를 감지한 경우에는 즉시 “감염방지 감독자”에게 보고

- 붙임 1. 구조·구급대원 안전관리표준지침 1부.  
 2. 구조·구급대원 감염예방관리지침 1부.  
 3.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가동 계획(질병관리본부, 서울특별시) 1부. 끝.

## 참고 1

## 구급대원이 노출될 수 있는 전염성 질병표

질 병 명	감염경로	백신유무	증 상
에이즈/HIV	주사바늘, 점막(눈, 입)에의 혈액 튀김, 상처에의 혈액접촉	무	열, 야간발한, 체중감소, 기침
수두	호흡분비물, 수포와의 접촉	무	열, 발진, 수포
설사	배설물, 입	무	설사
풍진	호흡분비물	유	열, 발진
A형 간염	배설물, 입	무	열, 식욕부진, 황달, 피로
B형 간염	주사바늘, 점막(눈, 입)에의 혈액 튀김, 상처에의 혈액접촉, 구강대구강 인공호흡	유	열, 피로, 식욕부진, 오심, 두통, 황달
C형 간염	상 동	무	상 동
D형 간염	상동, 과거 또는 현재의 B형 간염바이러스에 따라 다름	무	B형 간염이 합병증, B형 간염의 심각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
non-A, non-B형 간염	경로가 다른 몇 가지 바이러스	무	열, 두통, 피로, 황달
단순포진 (Herpes Simplex)	점막의 접촉, 감염에 있어 손가락은 특히 위험이 있음	무	입주변의 피부상처
대상포진	습성 상처와의 접촉	무	피부상처
인플루엔자	공기	유	열, 피로, 식욕부진, 오심, 두통
이	머리와 머리의 접촉, 직접 접촉 (통상 성적) 또는 속옷의 공동 사용	무	심한 가려움증, 2차감염
홍역	호흡분비물, 콧물·가래와의 접촉, 전염성 강함	유	열, 발진, 기관지염
수막염	호흡분비물(바이러스성은 배설물, 입)	무	열, 심한 두통, 목경직, 목통증
單球증가증	호흡분비물 또는 타액	무	열, 목통증, 피로
이하선염	호흡분비물 및 타액접촉	유	열, 이하선의 부음
살모넬라증	음식물	무	열, 복통, 설사, 오심, 잦은 구토의 갑작스런 발병
옴	가까운 신체접촉	무	가려움, 손가락·손목·발목 등 접히는 부분의 작은 선상 흔적
매독	원칙적 성적접촉, 드물게 수혈	무	생식선 및 피부장애, 신경변성
폐결핵	공기	무	열, 야간발한, 체중감소, 기침
백일해	공기, 구강상처와의 직접접촉	유	야간 심한 기침, 기침이 가라앉고 나면 그르렁거림

**참고 2****구조구급대원 안전관리 표준지침 교육결과**

- 기 간 : 2014.00.00.[월] ~ 00.00[화]
- 교육내용 :
- 대상 및 교육 인원 : 00119센터 총00명

팀별	교육 일시	대 상	장 소	교육 인원
1팀	2013.4.29.(월) 14:00~	00119 안전센터	사무실	00명
2팀	2013.4.30.(화) 14:00~			00명
3팀	2013.4.30.(화) 14:00~			00명
사진	사진	사진		
1팀	2팀	3팀		



# 참고 4     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

■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

##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

소방서  
구조대·구급대·안전센터

결재	팀 장	대장/센터장

성 명		계급		주민등록번호	
구조·구급활동 일지 일련 번호		접촉 일시		접촉지역 주소	
사고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화학반응 <input type="checkbox"/> 누출 <input type="checkbox"/> 화재현장 <input type="checkbox"/> 폭발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증기 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·구급	<input type="checkbox"/> 통제지역 <input type="checkbox"/> 제한지역 <input type="checkbox"/> 안전지역 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·구급차량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착용복장 (복수 선택 가능)	<input type="checkbox"/> 화학보호복 <input type="checkbox"/> 공기호흡기 <input type="checkbox"/> 방화복 <input type="checkbox"/> 보호안경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동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갑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 <input type="checkbox"/> 마스크	
활동영역			현장오염 제거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	
주된 증상 및 생체징후 (보고 당시)	주된 증상: 혈 압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맥 박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호 흡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체 온:				
자각증상					
감염경로	<input type="checkbox"/> 주사바늘에 찔림 <input type="checkbox"/> 호흡 <input type="checkbox"/> 혈액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		
접촉시간 (분)	<input type="checkbox"/> 통제지역: <input type="checkbox"/> 제한지역:			검진 내용 <input type="checkbox"/> 현장확인(구조·구급대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병원검진(의사)	
	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대상자·응급환자 접촉:				
위험물질등 명칭 (감염성 질병명)					

보고자 계급: \_\_\_\_\_ 성명: \_\_\_\_\_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 [보존용지(2종) 70g/m²]

## 참고 5

#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

### ○ 현장활동 기본 구조대원 개인안전장구

하 계	동 계
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하 계 : 헬멧, 구조조끼, 휴대용 랜턴, 보안경, 구조장갑, 무전기</li> <li>- 동 계 : 헬멧, 구조조끼, 휴대용 랜턴, 보안경, 구조장갑, 무전기, 기타 보온장구류</li> </ul>	

### ○ 화재사고

구조대원 착용기준	외국사례
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화재진압용 헬멧, 방화복, 내열내복, 화재진압용 장갑, 안전화, 제논탐조등, 휴대용랜턴 헤드랜턴, 공기호흡기, 면체가방, 개인정보기, 파괴장비, 무전기, 탐색줄</li> </ul>	

## ○ 산악사고

구조대원 착용기준	외국사례
	
<p>- 구조헬멧, 구조조끼, 안전벨트, 헤드랜턴, 휴대용랜턴, 보안경, 등산화, 구조장갑, 관절보호대, 카라비너, 하강기, 개인확보줄, 무전기, 배낭</p>	

## ○ 추락·승강기사고

구조대원 착용기준	외국사례
	
<p>- 구조헬멧, 구조조끼, 안전벨트, 헤드랜턴, 휴대용랜턴, 보안경, 구조장갑, 관절보호대, 카라비너, 하강기, 개인 확보줄, 등강기, 무전기</p>	

## ○ 붕괴사고

구조대원 착용기준	외국사례
	
<p>- 구조헬멧, 구조조끼, 안전벨트, 헤드랜턴, 휴대용랜턴, 보안경, 청력보호구, 방진마스크, 구조장갑, 관절보호대, 카라비너, 하강기, 개인 확보줄, 등강기, 호루라기, 무전기</p>	

## ○ 교통사고

구조대원 착용기준	외국사례
	
<p>- 구조헬멧, 방화복, 레벨C급 안전벨트(벨트절단기 등), 안전화, 보안경, 구조장갑, 파괴장비, 웨빙슬링, 무전기</p>	



## ○ 수난·잠수

구조대원 착용기준	외국사례
	
<p>- 헬멧, 건식잠수복, 잠수장비세트</p>	

## ○ 협곡·수상

구조대원 착용기준	외국사례
	
<p>- 헬멧, 건식잠수복, 안전벨트, 핀, 수경, 구명조끼, 인양로프</p>	

○ 생물·화학사고(Level-A)

구조대원 착용기준	외국사례
	
<p>- 구조헬멧, 공기호흡기, 레벨 A 생화학보호복, 안전화 또는 덧신, 무전기, 체크리스트, 카메라, 탐지용장비 등</p>	

○ 생물·화학사고(Level-B)

구조대원 착용기준	외국사례
	
<p>- 구조헬멧, 공기호흡기, 레벨 B 생화학보호복, 안전화 또는 덧신, 무전기, 체크리스트 등</p>	

○ 생물·화학(Level-C, D)

구조대원 착용기준	외국사례
	
<p>- 구조헬멧, 공기호흡기, 레벨 C 생화학보호복, 안전화 또는 덧신, 무전기, 체크리스트 등</p>	

○ 방사능사고(Hot Zone)

구조대원 착용기준	외국사례
	
<p>- 구조헬멧, 공기호흡기, 방사능보호복, 안전화 또는 덧신, 무전기, 체크리스트 등</p>	

○ 방사능사고(Warm Zone, Cold Zone)

구조대원 착용기준	외국사례
	
<p>- 구조헬멧, 공기호흡기, 레벨 C 생화학보호복, 안전화 또는 덧신, 무전기, 체크리스트 등</p>	

○ 폭발사고(폭발 前 위험지역)

구조대원 착용기준	외국사례
	
<p>- 방폭헬멧, 방폭복, 방폭담요, 투시용 탐지기, 카메라 등</p>	

○ 폭발사고(폭발 前 안전지역)

구조대원 착용기준	외국사례
	
<p>- 화재진압용 헬멧, 방화복, 내열내복, 화재진압용 장갑, 안전화, 제논탐조등, 휴대용랜턴 헤드랜턴, 공기호흡기, 면체가방, 개인경보기, 파괴장비, 무전기, 탐색줄</p>	

○ 폭발사고(폭발 後 안전지역)

구조대원 착용기준	외국사례
	
<p>- 구조헬멧, 구조조끼, 안전벨트, 헤드랜턴, 휴대용랜턴, 보안경, 청력보호구, 방진마스크 구조장갑, 관절보호대, 카라비너, 하강기, 개인 확보줄, 등강기, 호루라기, 무전기</p>	